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조 례]

제1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

● 고 시

제2021-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15

제2021-2호 :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고시 18

● 공 고

제2021-20호 :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11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
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다.

202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12월 16일자로「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됨에 따라, 市 조례 수정사항
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류형 지역화폐의 잔액 환급비율 변경 (안 제8조 제4항)

- (현행)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 (수정)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나. 전자식 지역화폐의 잔액 환급비율 변경 (안 제9조 제8항)

- (현행) 액면가의 80% 이상 사용시 잔액 환급
- (수정)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시 할인지원금을 제외하고 환급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 : lemonnala@junggu.seoul.kr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 3) 전 화 : 02-3396-5044 (팩스 : 02-3396-8680)

첨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6.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항번호 삭제)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지역화폐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을 “(지역화폐 사용대상)”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항번호 삭제)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하단 별지 서식 제1호를 첨부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제1항, 제4항,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류형 지역화폐 액면 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 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 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지역화폐를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자식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

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점수, 인센티브(추가충전, 캐시백 등을 포함한다)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1.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 2. 국가시책 반영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민법」,「상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 여)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소재지			
	주 소			
<p>「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함.</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p> </div> <p>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 70% 미만) 내 주차면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 시 보조금 지원 기준, 교부절차 등 근거 마련
- 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2. 주요내용

- 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 1)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1면당 지원기준은 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 범위 내로 함
 - 2) 보조금 교부·정산 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 3)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 반환
- 나.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보조금 지원
 - 1)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할 수 있음
 - 2)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 내에서 지원함
- 다.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 1)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른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50%에서 80%로 확대
 - 2)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 할인 적용항목의 ‘1급지 제외’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주차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별관 2층 주차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전화 : 02-3396-6253, FAX : 02-3396-8869, E-mail : choiyj81@junggu.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 중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로 한다.

제2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

제25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 개방 시 안전에 필요한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2.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 등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협약으로 정한다.
 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인근 노외 공영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4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3. 개방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4.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별표 1의 비교란의 제4호에 “50%범위”를 “80%범위”로 한다.

별표 1의 비교란의 제8의2호에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24조(보조의 대상) (생 략)</p> <p>1. ~ 3. (생 략)</p> <p>4. 건축물부설주차장을 <u>야간에</u>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p> <p>5. (신 설)</p> <p>제25조(보조의 방법) ① (생 략)</p> <p>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후단 신설></p> <p><신 설></p>	<p>제24조(보조의 대상)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건축물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p> <p>5. <u>구청장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u></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24조제4호에 따른 시설개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부설주차장 개방 시 안전에 필요한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p> <p>2. 부설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시설 보수</p> <p>③ <u>주차장 운영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개방부설주차장 이용·관리 등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협약으로 정한다.</u></p>

<신 설>

제25조의2(보조의 반환) ① (생략) 1. ~ 2. (생략)

② (생략)

<신 설>

- 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인근 노외 공용주차장 1면당 거주민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④ 제24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 1.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 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하였을 때
 - 3. 개방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때
 - 4.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또는 관련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 고> 1. ~ 3. (생 략)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1급지 공영주차장 단체계약(50대 이상) 체결시에는 6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 8의 1. (생 략)

8의2.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 (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

80%-----

5. ~ 8의1. (현행과 같음)

8의2. -----

----- (삭제)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호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고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옥외영업 시설기준적용특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1년 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로 사잇길’ 도로상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교류와 휴식의 공간 제공을 통한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
-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서울로 사잇길’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옥외영업 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 2.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처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개선하도록 한다.

제6조(행정처분)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에 의한 옥외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은 신고한 영업장과 연결된 동일 건축물 대지내 1층 전면공지 등에 한한다.
2. 옥외 시설에서 조리 시설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며, 영업장 내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을 설치한다.
 - 가. 파라솔 및 차양은 불연성 소재를 사용한 접이식으로, 테이블 및 의자는 플라스틱 이외의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질과 색상은 통일한다.
 - 나. 테크를 설치할 경우 도로경계선에 맞추고 높이는 20cm 이내로 설치하되, 초과할 경우 계단식으로 설치한다.
 - 다. 시설물 색상은 단색으로 하며, 중구 강조색의 색상 범위에서 주변 환경 및 건축물 외부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선택한다.
 - 라. 시설물로 인해 공용 공간 및 보행 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5. 옥외영업장 시설물은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여야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2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6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성광빌라	신당동 346-491	구분소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실시 ※ 고시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안전점검은 중구청에서 실시할 예정임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2021-20호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86호(2020.11.2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공람 요지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의 명칭 :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 면 적 : 4,993.0㎡(정비기반시설 : 도로 73.0㎡, 공원 763.6㎡ 포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무궁화신탁 대표 권준명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워)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건축계획 : 지하6층/지상17층, 연면적 60,392.62㎡, 업무시설 외

나. 공람 기간 : 2021.01.13. ~ 2021.01.27.(15일간)

다. 공람 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4)

라. 관계 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 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